

INNOVATION EWHA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주요 개정 사항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사 시 목 차

- I 정책 추진 경과
- 파 학교폭력 실태 및 변화 양상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내용
- ₩ 학교폭력 주요 현안 이슈
- V 학교 중심 학교폭력 대책(안)



I. 정책 추진경과

학교폭력 근절 정책 추진 경과

2004

학교폭력예방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2005. 2.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수행 (2005~2009)

→ 2009.12.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수행 $(2010 \sim 2014)$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등 (2011.12)

→ 2013.7.23 → 2014.12.22.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2.2.6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수행

예방 및 대책

제3차 학교폭력

(2015~2019)

2015.8.7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 2017.12.22.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 등(2017.9)

→1995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접근 시작

❖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05.2.)

목표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 및 전인적 성장 도모

범정부 · 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향후 5년내 학교폭력의 25% 경감 ⇒매년학교폭력발갱건수5%씩 경감추진

방향 1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추진체간의 연계적 운영 활성화

방향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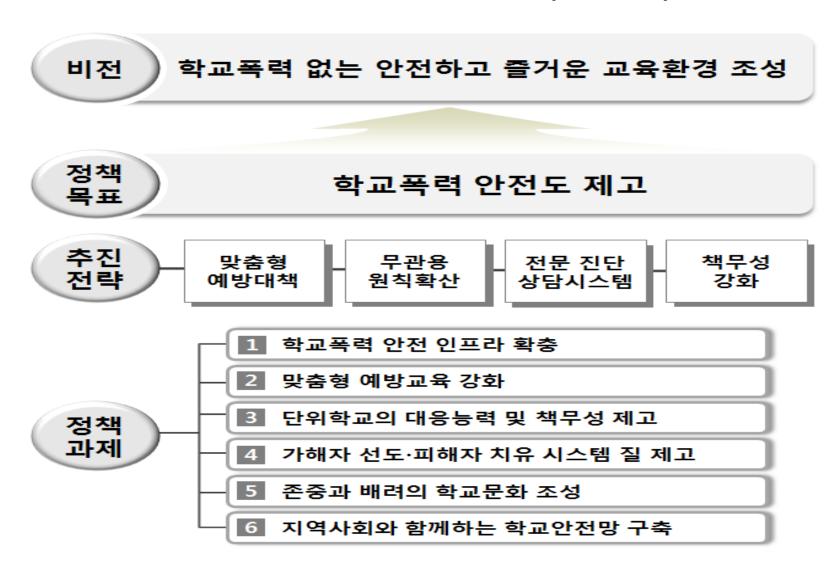
방향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전문능력 제고

방향 4

범정부·사회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통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09.12.)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2.6)

- 计卫星对记程于山村村



ストスなしれかり

'시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철저히 대응

-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대처 권한 및 역할 대폭 강화 은폐시 엄중조치로 책무성 확보
- 2 신고 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신고체계 일원화 조사·지원기능 체계화 가해/피해학생 조치 강화
- 3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생간의 자율적 갈등해결 학교단위 예방교육 체계화
-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학부모 교육·자원봉사 확대

己是山村

학교 - 가정 - 사회가 함께 인성교육 실천

- 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바른 생활습관, 학생생활규칙 준수 등 실천적 인성교육 추진
-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민·관 협력체제 강화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
- 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게임·인터넷 심의·규제 및 예방·치유교육 확대



❖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2013.7.23)

비전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목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5대 영역	20개 중	S점 과제
1. 학교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 활동 지원 강화	(1)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예방교육 (2)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 활성화 (3)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 적극 지원 및 역 (4)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및 대안되	유도
2. 폭력 유형별·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대응 강화	(5)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 (7) 처벌보다는 관계 회복에 역점을 둔 집단 대 (8) 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보호 강화 (10) 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대책 수립·추진	(9)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폭력서클 대응 강화
3.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11)학교폭력 조기 진단 및 관리 강화 (13) 가해학생 선도 및 조치 강화	(12)피해학생보호 및 치유 지원 강화 (14)학생 생활 지도 및 상담 여건 등 조성
4.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 축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5)학교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16)은폐·축소 및 부적절 대처 관리·감독 강호	ŀ
5. 안전한 학교 환경 및 전 사회적 대응 강화	(17)학교폭력 신고 시스템 개선 (19)지역사회의 예방 및 근절 활동 확산	(18)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20) 학교폭력 대책 추진체계 재정비

❖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4.12.22)

	비 전		ģ	생복하고 안전한 학교				
	목 표 학교			.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5대 분야			16개 추진과제				
1			1	인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인	성교육 중심	2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	폭력 예방 강화	3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4	폭력 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강화				
	하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5	학교폭력 위해요인 지속적 해소				
2			6	학생보호인력 확충				
			7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고저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8	학교폭력 조기 감지·신고 체계 강화				
3			9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7-		10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4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11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가해학생 선도	12	가해학생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				
	, I,		13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5			14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전 사회 [:]	적 대응체제 구축	15	지역사회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16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2015.8.7)

비전

폭력없는 행복한 초등학교

목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4대 중점 추진과제, 12개 세부 추진 과제

정신의학적 지원 강화		유해매체 노출 대책	가정의 역할 제고	학교의예방및대응역량강화		
② 고위기	심학생 조기 감지 학생 선별 및 지원 학생 치료 지원	① 유해정보차단을 위한 조치 ②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상담 및 치유 ③ 유해요인 예방교육 지원	① 가족관계 회복 및 부모 역할 교육 확대 ② 학부모 소등 활성화 및 체험형 치유 강화	① 학교폭력유형별 예방교육 추진 ② 초등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예방교육 강화 ③ 담임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역량 강화 ④ 초등학교 상담역량 강화		

❖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2017.12.22)

비전

공감·배검형 민주시민 육성

목표

폭력없는 청소년 문화 및 성장 여건 조성

청소년 폭력예방 및 재발 방지

[5대 영역 / 20개 주요과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노력 확대

- 예방교육 내실화
- 위기학생 관리강화
- 학교전담경찰관 업무정예화
- 피해학생 지원
- 가해학생 교육
- 사안처리 제도 개선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체계 화충

- 상담 및 사례관리
- 학습 및 직업교육 지원
- 비행예방 및 선도역량 강화

소년사법 체계 기능 개편

- 소년법 등 법률 개정
- 수사 등 초기 대용 역량 강화
- 소년범 사후관리 강화
- 피해자 신속지원 - 범죄예방 교육
- 확대

범정부 현업체계 개선

-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
- 지역단위 대용역량 강화
- 정보공유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

가정의 자녀지도 역량 강화 및 대국민 인식 개선

부모교육 확산 - 가해학생 부모교육 강화 - 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

전략

질적 양상 변화에 적극 대응 집중관리 가정-학교-사회-국가 전방위적 대응 및 지역 대응 역량 강화

교육적 기능 및 회복적 정의 복원을 통한 근원적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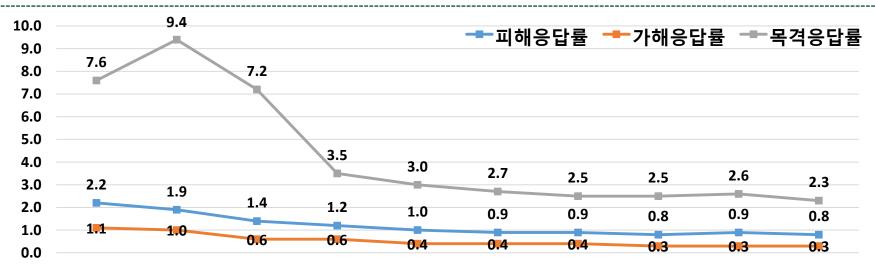


II. 학교폭력 실태 및 변화 양상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경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12.2.6) 및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13.7.23.) 수립· 추진 등 범사회적 노력으로 학교폭력 발생은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

- ▶ 학교폭력 피해응답: 22%(13.1차)→1.4%(14.1차)→1.0%(15.1차)→0.9%(16.1차)→0.8%(16.2차)→0.9%(17.1차)→0.8%(17.2차)
- ▶ 학교폭력 가해응답: 1.1%(13.1차)→0.6%(14.1차)→0.4%(15.1차)→0.4%(16.1차)→0.3%(16.2차)→0.3%(17.1차)→0.3%(17.2차)
- ▶ 학교폭력 목격응답 : 7.6%(13.1차)→7.2%(14.1차)→3.0%(15.1차)→2.5%(16.1차)→2.5%(16.2차)→2.6%(17.1차)→2.3%(17.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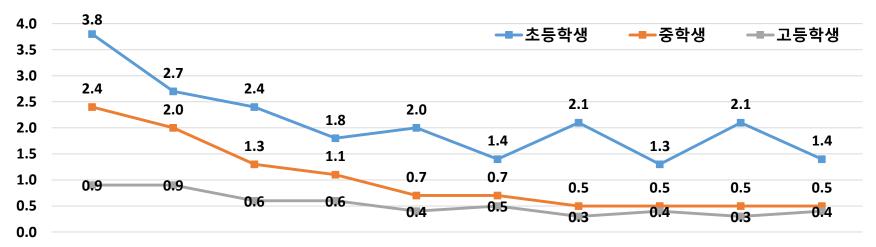
2013년 1차 2013년 2차 2014년 1차 2014년 2차 2015년 1차 2015년 2차 2016년 1차 2016년2차 2017년1차 2017년2차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

최근 실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16년 2차) 결과, 초등학생 피해응답률이 중등학생 피해응답률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남.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 > 초등학생: 3.8%('13.1차)→1.8%('14.1차)→2.0%('15.1차)→2.1%('16.1차)→1.3%('16.2차)→2.1%('17.1차)→1.4%('17.2차)
- ▶ 중 학생: 2.4%('13.1차)→1.3%('14.1차)→0.7%('15.1차)→0.5%('16.1차)→0.5%('16.2차)→0.5%('17.1차)→0.5%('17.2차)
- ▶ 고등학생 : 0.9%('13.1차)→0.6%('14.1차)→0.4%('15.1차)→0.3%('16.1차)→0.4%('16.2차)→0.3%('17.1차)→0.4%('17.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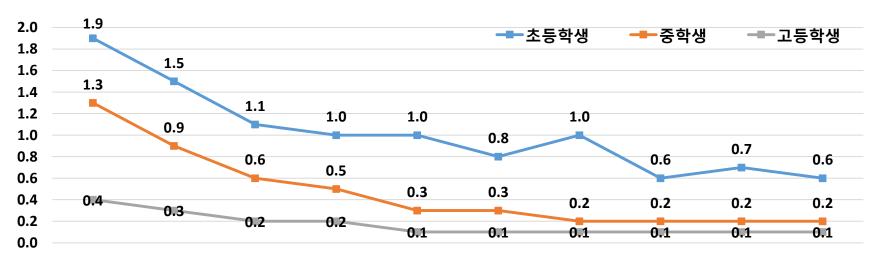
2013년 1차 2013년 2차 2014년 1차 2014년 2차 2015년 1차 2015년 2차 2016년 1차 2016년2차 2017년1차 2017년2차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

또한, 초등학생 가해응답률이 중·고등학교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학교폭력 가해응답률]

- > 초등학생 : 1.9%('13.1차)→1.1%('14.1차)→1.0%('15.1차)→1.0%('16.1차)→0.6%('16.2차)→0.7%('17.1차)→0.6%('17.2차)
- ▶ 중학생: 1.3%('13.1차)→0.6%('14.1차)→0.3%('15.1차)→0.2%('16.1차)→0.2%('16.2차)→0.2%('17.1차)→0.2%('17.2차)
- ▶ 고등학생: 0.4%('13.1차)→0.2%('14.1차)→0.1%('15.1차)→0.1%('16.1차)→0.1%('16.2차)→0.1%('17.1차)→0.1%('17.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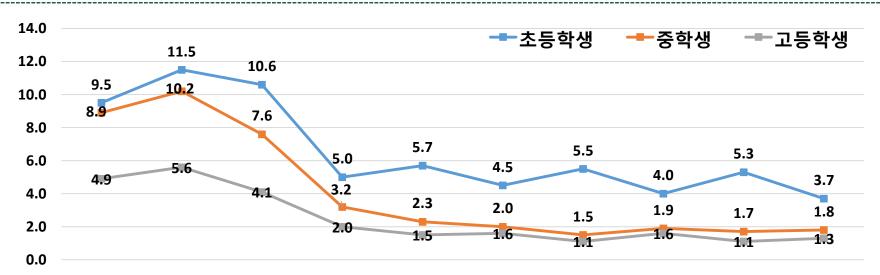
2013년 1차 2013년 2차 2014년 1차 2014년 2차 2015년 1차 2015년 2차 2016년 1차 2016년 2차 2017년 1차 2017년 2차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

목격응답률도 초등학생이 중·고등학교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폭력 목격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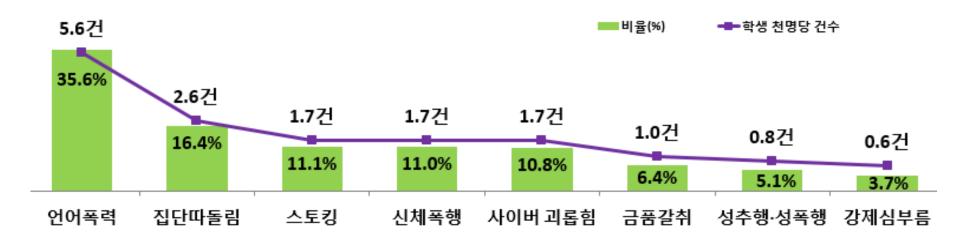
- 초등학생 : 9.5%('13.1차)→10.6%('14.1차)→5.7%('15.1차)→5.5%('16.1차)→5.5%('16.2차)→5.3%('17.1차) →3.7%('17.2차)
- ▶ 중학생: 8.9%('13.1차)→7.6%('14.1차)→2.3%('15.1차)→1.5%('16.1차)→1.5%('16.2차)→1.7%('17.1차)→1.8%('17.2차)
- ▶ 고등학생 : 4.9%('13.1차)→4.1%('14.1차)→1.5%('15.1차)→1.1%('16.1차)→1.1%('16.2차)→1.1%('17.1차) →1.3%('17.2차)



2013년 1차 2013년 2차 2014년 1차 2014년 2차 2015년 1차 2015년 2차 2016년 1차 2016년 2차 2017년 1차 2017년 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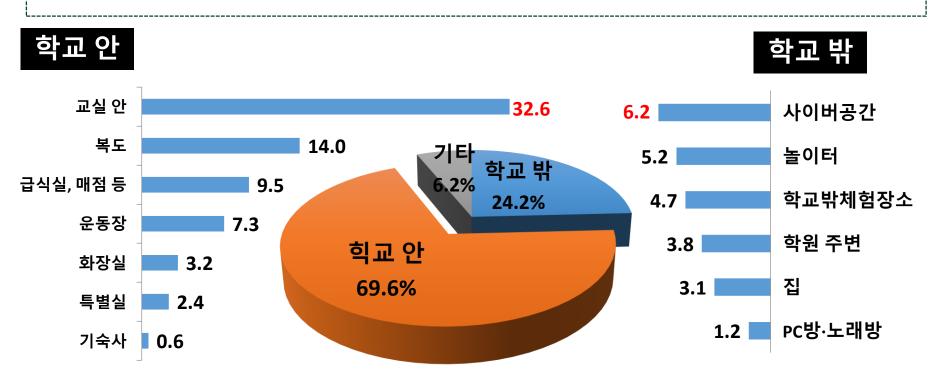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피해 시간

- ▶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응답 건수는 전년 동차와 유사('15년 71천건→'16년 60천건 →'17년 60천건)하였고, 피해 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35.6%), '집단 따돌림'(16.4%), 스토킹(11.1%), 신체폭행(11.0%) 순으로 나타남.
- ▶ 학교폭력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5.1%)과 '점심시간' (18.0%), '하교 이후'(13.6%), '수업시간'(10.5%)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교폭력 발생 장소

- **▶ (학교 안) 교실 안(32.6%)** > 복도(14.0%) > 급식실, 매점 등 (9.5%) 순
- ▶ (학교 밖) 사이버공간(6.2%) > 놀이터(5.2%) > 학교 밖 체험장소 (4.7%) 순



학교폭력 감소 원인

범부처 협업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지속 추진 성과의 가시화

- ▶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의 지속적 감소는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온 결과, 그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 *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이라는 국정과제 하에「현장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13.7.23.),「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4.12.22.)과「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15.8.7.) 수립·추진



❖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학교폭력 발생은 여전 함. 학교 현장 문화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됨.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구성

I. 학교폭력의 이해

01.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02. 사안처리 흐름도 03. 사전 예방활동 04. 유의사항

田. 사안처리 절차

1장. 초기대응

- 1. 학교폭력 감지·인지 노력
- 2. 신고 및 접수
- 3. 초기대응 요령

2장. 사안조사

- 1.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 2.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 3. 긴급조치
- 4. 상담 시 유의사항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 1. 자치위원회 구성
- 2. 자치위원회 운영
- 3. 자치위원회 절차
- 4. 피해학생의 보호
- 5.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6. 분쟁조정

4장.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 1. 재심
- 2. 행정심판
- 3. 행정소송

[참고] 사법처리 절차

부록

- 1.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4. 성폭력 사안처리

- 2. 각종 양식 3. 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 5.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I. 학교폭력의 이해

01.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 ▶ 용어의 정의 추가 : '학교' 및 '학생'의 정의, 학년도의 기준 제시
 -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모두 포함한다.
 - "학생"은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학년도"의 기준일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4조)
 - ※ 이후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학년도"의 기준은 위와 같음.

I . 학교폭력의 이해 03. 사전 예방활동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내용 반영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목표

- 국가수준의 조사 실시로 학교폭력 예방 및 인식 제고
- 시도 있는 조사 실시로 맞춤형 학교폭력대책 수립 지원

기본 방향

- 표본조사 도입으로 조사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사이버 폭력 등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 반영
- 학생의 발달단계 및 인식수준을 고려한 문항 개발
- 피해학생 중심의 문항 설계 및 조사참여 환경 조성

조사 체계

표본조사 도입 (전수 1회 + 표본 1회)

조사실효성 제고

조사 문항

초.중등 문항 분리 사이버 상 경험과 실제경험의 구분

조사 운영

개별참여 환경 조성 (동일한 응답시간) 심층분석 및 연구

I. 학교폭력의 이해

04.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좀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문구 수정
- 1.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 2.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3.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 도록 한다.
- 4.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 5. 학교폭력 사안은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 전까지** 는 가해학생, 피해학생을 단정짓지 말고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6. 전담기구의 조사 및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시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여야한다.
- 7. 자치위원회 결과는 **'학교장 명의'로 서면통보**하고, 이 때 **재심 및 불복절차를 안내**한다.
- 8. 자치위원회 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비밀을 엄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9.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성격의 자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 10.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田. 사안처리 절차

1장. 초기대응

▶ 신고 및 접수 절차(21쪽) : 교육청 보고 기한을 기존 '24시간 이내'에서 '인지 후 48시간 이내'로 수정

신고서 작성, 접수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 접수

신고 대장 기록

- 신고서를 신고 접수 대장에 기재 하여 보관 〈양식 1-1〉
-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

접수 보고

- 학교장에게 보고(양식 1-2)(학교 장은 자치위원회에 즉시 통보, 법 률 제20조 제3항)
- 담임교사, 보호자 통보
- 다른 학교와 관련된 경우
 해당 학교에 통보
- 교육청 보고(24시간 이내) 〈양식 1-2〉

교육청(교육지원청)보고 (인지 후 48시간 이내)

田. 사안처리 절차

2장. 사안조사

- ▶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36쪽): 장애학생 및 다문화·탈북학생 관련 내용 추가
 - 장애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및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진술기회 확보 및 조력을 제공한다.
 -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학생(중도 입국, 외국인학생 등) 및 **탈북학생**의 사안조사 시, 통역의 활용 또는 담당교사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 기존 가이드북 38쪽 하단의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서, 담임교사를 삭제하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수정

п. 사안처리 절차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 ▶ 자치위원회의 구성(47쪽) : 학부모대표 선출 방법에 대한 내용 추가
 - 학부모대표 선출은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학부모총회 등의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하고, 학급대표 학부모 또는 녹색어머니회 등의 대표들을 지명· 위촉하는 방식은 부적절함.
 - 무투표 당선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 를 거치는 것이 필요함.
 - 학교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였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가 정통신문, 회의록 등)를 남겨두어야 함.

田. 사안처리 절차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 ▶ 자치위원회의 구성(47쪽) : 공동자치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 추가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 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공동자치위원회 구성은 선택 사항이므로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와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가 따로 자치위원회를 열어 각각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의 선도 조치 결정이 가능하나,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징계의 형평성을 위하여 공동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합리적임. 개별적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피·가해학생 모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공동자치위원회는 각 학교의 장에게 결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결과통보서는 피·가해학생이 소속된 각 학교장 명의로 발송하여야 함.

田. 사안처리 절차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기준(61쪽):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6-99호) 반영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조치의 결정)
 -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 속 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기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높음	- 쉐다 저스에 띠르 조비에드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해당 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 30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				
	교내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 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기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				
	선도 ²⁵		경에 대한 접속, 접락 및 모 복행위의 금지	의결할 경우				피해학생이 장애학				
가				1911121	122 01					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생인 경우 가해학생	
해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학 생 에	│ 기싼		4 호	사회봉사				에 대한 조치를 가중				
에							<i>1~</i> 9⊟			1	할수있음	
대	연계 선도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 교육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			
한 조						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ţ					
소 치 시		교내			출석정지			10~12점			수 있음	
	교육 교육 환경 변화 교	╨네	7호	학급교체			13~15점					
		변화 8	8호	전학			16~20점					
		파괴	9호	퇴학처분			16~20점					

田. 사안처리 절차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62쪽) : 구체적인 내용 추가

조치 시일 및 이수 기간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후 14일 이내 해당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한다.

자치위원회 조치

14일 이내

학교장 → 보호자

-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
-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 이수하도록 시간 및 장소 안내

田. 사안처리 절차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62쪽) : 구체적인 내용 추가

조치 미이수

-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 장은 3개월의 다음 날 동 보호자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다.
-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6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1개월 이내에 참여하도록 서면으로 안내한다.

보호자 조치 불응/미이수



학교장 → 보호자

•과태료 부과 안내 •교육 이수 재통보 조치 후 3개월 다음날 학교장 →시·도교육감

해당 보호자 명단 통보 16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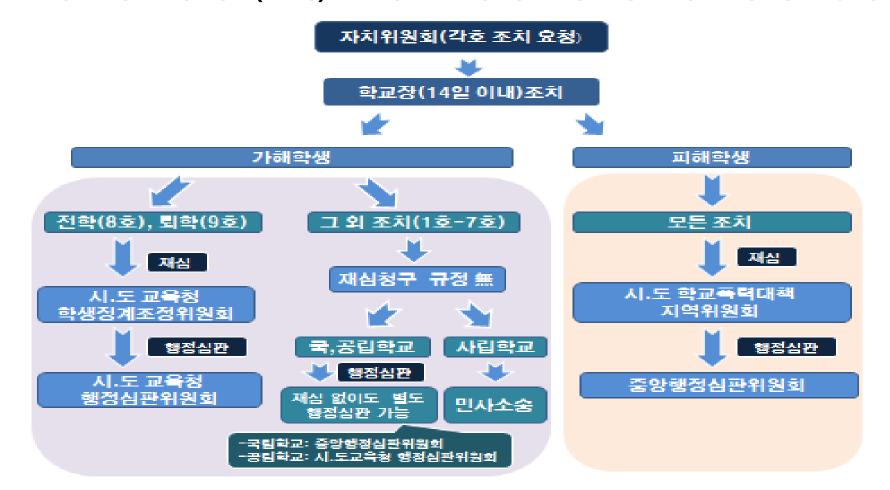
시·도교육감 →보호자

1개월 이내 참여 서면 안내

п. 사안처리 절차

4장.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 조치 불복 절차 개관(70쪽) : 조치 결정에 대한 재심과 불복 절차 개관 추가



田. 사안처리 절차

4장.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 재심 청구(73쪽) : 재심결정시까지 조치 이행의 유보 관련 내용 추가

<학교장 조치에 대해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결정시까지 조치 이행의 유보>

-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청구 대상(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퇴학 조치)만 유보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병과 조치(1호~7호)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유보되지 아니한다.
- 지역위원회에 재심이 청구된 경우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만 유보되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유보되지 않는다.
 - 피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유보된다.
- ※ 재심 절차와 달리,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소송이 제기되어도 해당 조치는 유보되지 아니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이 유보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치의** 학생부 기재는 이뤄져야 한다. 재심으로 조치가 변경된 경우 절차에 따라 수정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방향

2018년 개정 방향

- 2014년 12월 이후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
-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 '24시간 이내 교육청 보고' 등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간 조정
- 전반적으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해가 용이하도록 문구 수정

향후 계획

- 2018년 4월 중에 "201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 배포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 침」 개정 시 관련 내용 반영하여 개정증보판 발행 예정



IV. 학교폭력 주요 현안 이슈

학교폭력 주요 현안 이슈

현 황

문 제 점

단순한 장난, 사소한 다툼

교우관계 훼손

조치 중심의 대응



진정한 반성 미흡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민원, 분쟁, 재심의 악순환

사후 조치 중심의 행정절차



교사·학교의 피로감 누적

학교폭력 주요 현안 이슈

제 20대 국회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관련 계류의안 총 17건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 총 6건
-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관련 : 총 3건
-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관련 : 총 3건
- ➤ 재심 제도 관련 : 총 1건
- ▶ 기타 (학교폭력 관련 조사 자료 보존,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 학교폭력 은폐·축소 방지 등) : 총 4건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혁신 방향과 과제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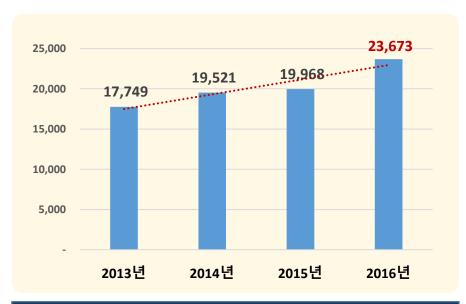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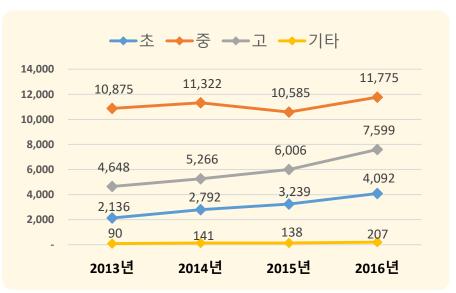
원 칙

-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 유지
-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확산
- 교육당사자간 분쟁을 줄여서 학교와 교사의 부담 최소화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관계 회복 중심의 가해학생 교육 강화

경미한 사안처리로 학교부담 가중

- 단순한 다툼, 장난에 의한 신체 접촉 등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도 모두 자 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증가
 - ※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 2013년 17,749건 → 2016년 23,673건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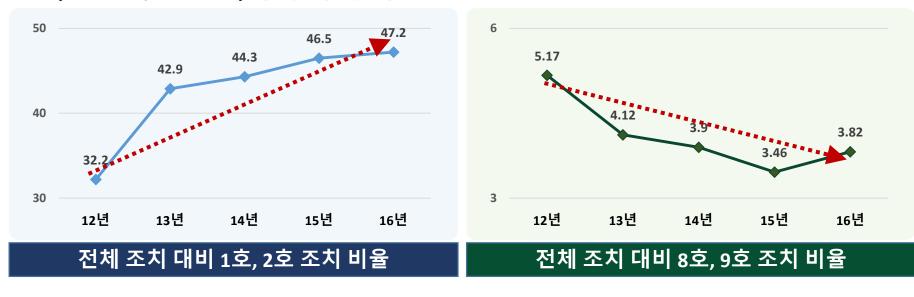




자치위원회 전체 심의 건수

학교급별 심의 건수

- 경미한 사안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개최에 따른 재심 및 관련 소송의 증가로 학교 및 교원에게 커다란 업무 부담으로 작용
- 자치위원회 선도 조치 중 상대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선도 조치
 (서면사과, 접촉금지)가 증가 추세



일부 학교에서 자체 종결한 사안에 대해 은폐·축소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례(A초등학교 직위해제 사례)도 있음.

한거리

'화해' 없는 처벌, '교육' 없는 학교…학교폭력예 방법의 눈물 🔕 본문듣기 🚳 설정

기사입력 2016-11-22 05:05 | 최종수정 2016-12-18 16:45

2 1 170

⊕319 [🕏

[한겨레] 학교폭력예방법 엄벌·징계 강화···피해자 요구땐 무조건 (Οŧ

가벼운 다툼 아이들 화해해도 회부…재심 급증 행정소송까지

"생기부 쓰는데 화해는 무슨…" "사과도 못받아" 갈등 더 커져

교장에 생기부 재량권 부여 등 조정 중심 교육적 해법 찾아야

지난 5월, 학교 수련회에 간 서울 ㄷ고 1학년 ㅎ(16)군은 친구 둘과 담배 공간으로 전략했다는 지적(☞기사 보기)이 많았다. 우다 교사 눈에 띄었다. ㅎ군과 또 한 학생은 벌점이 깎일 것을 염려해 지도부에서 진술서를 쓸 때 '길에서 주운 담배'라고 말하기로 입을 맞췄국회입법조사처가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 게재된 보고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실을 모른 채 '자신이 준 담배를 셋이 피웠다'고 진술했다. 이를 알게 된 은 호군을 찾아가 뺨과 배를 수차례 때렸다. 담배의 출처에 대한 재조시 어지고 ㅇ군이 자신의 생각대로 진술하지 않자 얼마 뒤 다시 ㅇ군을 화 로 불러내 얼굴과 배를 때렸다. 학교는 지난 6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위원 과반수가 학부모이고 학교 단위로 구성되는 학폭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 폭위)를 열어 ㅎ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입법조사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지침 재검토해





상급학교 진학 불이익 탓 가해학생 행정소송 줄이어 "일정기간 기재 유예" 제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현 행 교육부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 지원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학생부종 합전형 확대 등 상급학교 진학에 학생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학생부 기재를 피하기 위한 가해학생의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가 쟁송(爭訟)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개선과제'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결 하지만 다음날 늦게 등교한 친구 ㅇ(16)군은 다른 두 친구들이 입을 맞^{늦과가 나오면 즉시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돼 있는 현행 교육부 훈령을 일정 기간 기재} 를 유예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상급학교 진 학에 학생부가 반영되고 있는 만큼 가해학생의 반성과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기 위해 교육지원청마다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조 조사관은 "의 사, 경찰, 변호사, 전문 상담사 등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학폭위 위원들의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 객관적 심의가 어렵다는

한국일보

법정으로 가는 학폭 '부모들의 전쟁' 되다

[사회>교육_시험 | 사회>사건_사고] 2017-07-31

원본기사

가

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피해자 즉 "학교가 가해자 비호" 가해자 즉 "중징계로 입시 불이익 가혹"

가. 학생부 기재 제도 도입 및 변화 과정

❖ 2012년 2월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핵심과제로 도입

행동특성

기재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2012년도 시행 초기

2013년도 (2013.3.1)

현행(2014.1.16.~)

종합의견

출결상황

'특기사항'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봉사)

7호(학급교체)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학적사항 '특기사항'

8호(전학) 9호(퇴학처분)

졸업후5년간보존 단고등학교는 상급학교 입학전형 자료로활용할수있 도록전산매체로 5년간축가보존

학교폭력 사항 학생부 기재에 대해 '졸업 적 삭제 심의제도' 나 '중간 삭제제도' 도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12.83)

1호,2호,3호,7호는 해당학생의졸업과 동시에 삭제

해당학생의반성정도와 긍정적행동 변화정도를 고려하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후졸업과동시에

삭제가능

1호, 2호, 3호, 7호는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

🎤 4호, 5호, 6호, 8호 È 졸업 한 날로부터 ↘년 후 삭제

▶ 9호는 계속 보존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자료의 보존)

- •가해학생의 인권 침해 및 입시/취업에 불이익
- •이중처벌 우려
- •비교육적 조치



- •가해학생 선도 교육을 위한 유용한 정보
-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





나. 학생부 기재 제도의 문제점

- 제도 도입시 우려 되었던 가해학생에 대한 낙인효과 발생 및 상급학교 진학에 악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효과로 인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강력한 반발
- 학교와 교사는 가해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강력한 민원에 시달리는 상황
- 자치위원회 결정과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 후속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부작용 발생
 - ▼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등 상급학교 진학에 학생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학생부 기재를 피하기 위한 가해학생의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추세(헤럴드경제,
 2017.2.6)
 - 가해학생에 대한 지속적 생활지도와 관계 회복 등 교육적 목적과도 괴리

'서울신문

[단독] 학교폭력 신고 쏟아져도...학폭위 못 여는 학교들

[사회>교육_시험 | 사회>사건_사고 | 사회>미디어] 2017-06-23 / 김기중

원본기사 가 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학생부 항목	가해학생 조치사항	졸업시 조치	보존 및 삭제
학적사항	8호(전학)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졸업시 미삭제된 기록은 졸업 2년 후 삭제
	9호(퇴학)	-	보존
출결사항	4호(사회봉사)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졸업시 미삭제된 기록은 졸업 2년 후 삭제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호(서면사과)	졸업과 동시에 삭제	
	2호(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3호(교내봉사)		
	7호(학급교체)		

서울교육청도 감사 뒤 '주의'만 '솜방망이 처벌하나' 논란 키워 경미한 처벌도 학생부에 '빨간줄' 대입까지 좌우... 학부모 반발 커

"학폭위 처벌 완화 방침 필요" 지적서울지역 사립 고교들이 학생들의 학교폭력 신고를 받고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은 채 이를 무마했다가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돈을 뺏거나 폭행 등

한거리

손잡은 전교조·교총 "부작용 큰 학교폭력예방 법 개정해야"

[사회>교육_시험 | 사회>노동_복지] 2017-06-22 / 김미향

원본기사 가 가



● 적히느냐를 두고 학부모들은 자녀가 불이익 받을까봐 과하게 보호하는 '부모주 생 사이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부모 간 법적 분쟁으로 가 '대리전'이 총 회장)

1 복잡해지면서 법적 분쟁이 증가해 교사들의 자존감과 효능감이 낮아지고 있다. 본 |도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관한 비전문적인 법률 업무에 과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과 관련한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김해경 전교조 서울지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진보 원단체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 대응방식을 바꾸자"며 한 목소리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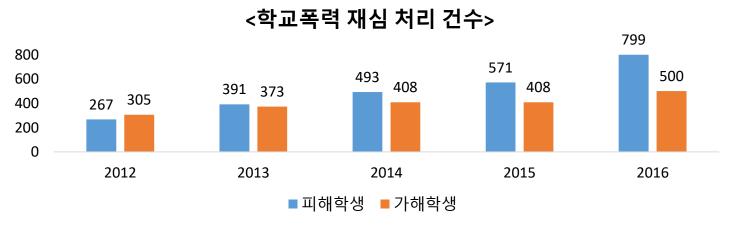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는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개정 전 과도기 대책으로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어 학교폭력과 교권보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배치해 각 학교의 학폭위를 지원해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7명의 전담변호사를 더 배치하겠다"며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학교폭력예방법 13조2항에 따라 학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규정되면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처분해야 한다. 교육부 지침으로 이 처분은 반드시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 2011년 학교폭력으로 대구의 한 중학생이 자살한 것을 계기로 한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자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학부모대표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자치 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실제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일부 지역(도서, 산간, 농촌지역 등)에서는 자치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들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운영 시 외부위원의 참석률 또한 저조한 상황임.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나. 자치위원회의 온정적 사안처리

- 학교폭력을 학교현장에서 해결하자는 취지가 오히려 자치위원회의 객관 적 사안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음.
-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들은 감정적 호소에 영향을 받거나 인간관계적 측면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됨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학부모 위원 과반수는 필수 사항이지만 외부 전문위원** 위촉은 강제 사항이 아님. 학부모 위원은 교감 등 학교 측 의견에 영향을 받고, 자치위원회에 참가한 학부모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도 벌어짐(헤럴드경제, 2017.9.20).

자치위원회에 외부 전문 인사가 부족하여 학교의 사안처리에 대한 추가적 분쟁이 발생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이 확대됨.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한국경제

[경찰팀 리포트] 갈등만 키우는 학폭위... 징 계 대신 '양자대화'가 대안 될까

[사회>교육_시험] 2017-08-05

가

가

그러나 학폭위가 이 같은 도입 취지와 달리 피해자 및 가해자 학부모 간 불신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폭위에서 사안에 따라 서면사 과(1호)~퇴학(9호) 등 징계를 받으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는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김군 부모가 거세게 반발한 것도 "특수목적고(특목고)에 보낼 아이의 미래를 이런 일로 망치려는 것이냐"는 이유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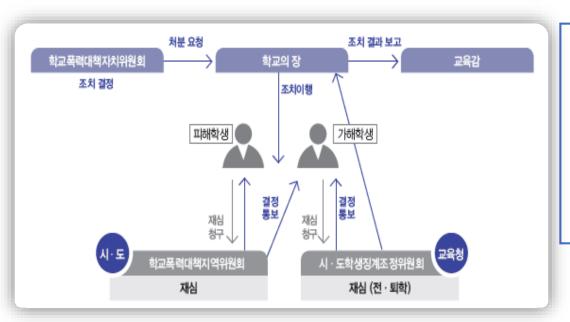
학폭위 구성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학폭위는 학교장의 재량 아래 5~10명으로 꾸릴 수 있다. 원활한 의결을 위해 보통 5·7·9명 등 홀수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같은 학부모 중에서 뽑아야 한다. 여기에다 생활지도교사 및 담임교사, 교감·교장 등 필수 관계자들이 나머지 자리를 채우고 나면 경찰 변호사 심리전문가 등 외부인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된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 숭의초등학교 '야구방망이 폭행 사건'에서 보듯 학폭위가 오히려 문제를 축소·은폐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처럼 '내부자들의 밀실 재판'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일부 학교에선 학부모 위원 몫을 놓고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기도 한다. "저 사람은 가해학생 이웃이다", "이 사람은 피해학생 가족과 절친하다"며 제척·회피 신청이 난무한다. 부산의 한 초등교사는 "학폭위를 열기도 전에 감정의 밑바닥을 드러내니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학폭위 재심청구는 2012년 572건에서 지난해 1229건으로 폭증했다. 학교가 쟁송의 장으로 전락한 셈이다.

4. 재심 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

4. 재심 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

가. 이원화된 재심절차로 인한 혼란



- ✓ 피해학생: 지역위원회→중 앙행정심판위원회
- ✓ 가해학생: 학생징계조정위 원회→시·도교육청 행정 심판위원회

- 지역위원회와 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서로 다른 경우 혼란이 발생하고, 사안처리가 지연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이 가중됨.
- 지역위원회는 가해학생 측에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지만, 징계조 정위원회는 피해학생 측에 결과 통보 규정이 부재함.

4. 재심 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

나. 재심의 공정성 문제

피해학생의 재심 청구 시 가해학생에게는 출석 및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가해학생의 재심 청구 시에는 피해학생의 참여 없이 재심이 진행 되어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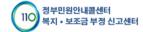
현행법상 재심제도에서는 가해자의 재심결과가 피해자의 학교생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 사실을 피해학생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학교에서 다시 마주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피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통보해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는 피해학생 측의 참여가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헤럴드경제, 2017. 08. 10.).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이 전학 또는 퇴학 이외의 조치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함. 우연히 결정된 소속 학교의설립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권리 보장 절차는 위헌적 소지가 있음.

4. 재심 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



보도자료



■ 총 7쪽(붙임 4쪽)



국민권익위원회

- ---

2017. 6. 15.(목)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제도개선총괄과 과 장 김원영 55€ 044-200-7211 서기관 이영택 55€ 044-200-7216

사무관 권건우 🕾 044-200-7219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시 피해학생 참여 보장

작성

국민권익위,「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 13일 교육부에 제도개선 권고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학생에게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시·도 및 시·도교육청에 각각 설치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학교폭력 재심위원회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13일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천안 학교폭력, 재심에도 '봉사 10시간' 솜방망이 처벌

2017-08-23 06:00 대전CBS 김미성 기자ロ

및 댓글(o) f y == 4

+ - 🗇

"학급교체 이루어진 점과 가해 학생 선도 가능성 고려"



* (사진=자료사진)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한 충청남도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충남학폭지역위)의 재심에서 '학교 봉사 10시간'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학교 측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조치 없음' 결정을 내린 것과 달리 피해자의 주 장이 일부 인정됐지만, 재심 결과마저 가벼운 조치에 그쳐 학부모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7, 13 : (관련기사 : 피해 학생은 학교도 못 나오는 데…학교폭력 증거 불충분이라고?))

지난달 10일 열린 충남학폭지역위 재심 결정서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쌍용동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10)군이 지난 5~6월 동안 4명의 동급생에게 학교 폭력을 당



V.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기 위한 학교 중심 학교폭력 대책(안)

/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기 위한 학교 중심 학교폭력 대책(안)

현황 및 문제점

- 사소한다툼 → 교우관계훼손
- 조치중심대응→진정한반성미흡
- •학생부기재→민원.분쟁.재심의악순환
- 사후조치중심의행정절차→교사와학교의피로감누적

기대효과



- 교우관계회복
- 진정한 반성과사과 재발방지
- 민원,갈등,부담의완화
- 화해와 평화, 신뢰 회복

평화로운 교실

단기 방안

중·장기 방안

장기검토

•경미한사안에대한학교장종결제도도입

1단계. 객관적 판단 (적용 제외 : 고의적·지속적 폭력 2명 이상의폭력전치2주이상의상해성관련폭력등) **2단계 주관적 판단**: 학생 및학부모 간화해 수준 판단

•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개선

1단계 인력풀 운영(전남교육청사례) 2단계 학부모위원 구성비율 조정 :학부모위원구성비율축소

학교

평화

로운

교실

•반성과회복중심의사안처리:학생부기재개선

1안.조건부기재:1~7호조치의경우,조치의성실한 이행과진정한반성이 있을시 1회에 한해기재유예

2안.학년말식제:학생부기재는하되가해학생의행동

변화를보고학년말에삭제

3안.일부미기재 : 1~5호 조치미기재

•재심제도의 합리화

//칭/학생소청심시위원회 신설 : 재심 기관의 일원화를 위해 학생 분쟁에 관한 시항을특별심판절차로심리할수있도 록별도기구신설

학교폭력 사안처리 소멸시효 도입

- •학부모상담강화 및학부모교육법제화추진
- •피· 가해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피해학생 및 학부모지원 강화
-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내실화

1.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자율 처리

1.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자율 처리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종결제 도입

-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학교의 교육적 관계 회복 역할 확대
- 학교장 종결제 도입: 담임교사 종결제의 경우, 담임교사에게 판단의 부담
 전가, 학교폭력 은폐·축소의 우려를 고려하여 학교장 종결로 처리
 - ※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적용
 - ※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 2명 이상의 학생이 폭력(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 포함)을 행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 성 관련 학교폭력 등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장 종결제 적용 제외

학교장 종결제 도입시 처리 절차 (안)

경미한 학교폭력 발생 전담기구의 1차 조사 : 객관적 사안 수준 판단

전담기구의 2차 조사 : 학생 간 화해 수준 판단

전담 기구의 합의

학교장 최종 결정 교육청 보고

자치위원회 보고

2. 가해학생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제도 개선

2. 가해학생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제도 개선

1안. 조건부 기재

▶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1호~7호까지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조건부로 1회에 한해 기재를 유예* 하고, 재발한 경우 2회의 조치 결과를 모두 기재

기재 유예 조건

1)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서 **8호와 9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해당 학생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반성의 모습을 보일 것**, 3) **가해학생 학부모**(보호자)의 경우 특별교육 등 해당 조치를 이행하고 해당 학생에 대해 적절한 교육적 지도를 행할 것

주장 이유

 1~7호의 경우, 1회 조치 기재 유예를 통한 학생 간의 관계회복 기회 제공 및 반성과 재발 방지

기대 효과

- 낙인효과 제거 및 후속 분쟁 감소에 효과
- 경미한 사안 기재에 따른 부작용 해소
- 관계회복 기회 제공 및 재발 방지 (가해학생 통제 수단 확보)

예상 우려

- 학교폭력 엄정처리 기조가 후퇴한다는 인식 확산
- 학생부 기재가 유예된 조치의 기록 관리 및 보존 어려움

2. 가해학생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제도 개선

2안. 학년말 삭제 (중간 삭제)

▶ 가해학생 조치 중에서 퇴학 조치(제9호)를 제외한 모든 조치(제1호~8호)를 자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년말에 삭제

삭제 조건

교우관계 회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해자의 행동변화가 있고, 피·가해학생 간 진정한 화해가 있는 경우 등

주장 이유

• 학생부 기재는 하되, 가해학생 행동변화를 보고 학년말에 삭제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음.

기대 효과

- 학교폭력 엄정 처리 기조 유지
- 주기적으로 가해학생의 재발 여부, 변화 정도 등 점검
-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학년말 삭제를 통해 낙인효과 제거에 일부 효과적

예상 우려

- **학교폭력 경각심 약화**('연말정산 개념'으로 오인) **우려**
-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효과 약화
- 학교업무 부담 증가

2. 가해학생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제도 개선

3안. 일부 미기재

▶ 가해학생 조치 중에서 제6호~9호 조치의 경우, 조치 사실 기재와 무관하게 학생 부에 기록(출결 관리, 학적)이 남으므로 제1호~5호까지 미기재

주장 이유

- 피해학생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에 효과적
- 기록과 삭제로 인한 업무 과중과 소송 빈발

기대 효과

- 경미한 사안은 미기재하는 것이 교육적 선도에 효과적
- 학생부 미기재에 따른 관련 업무 및 후속 분쟁 감소

예상 우려

- 학교폭력 엄정 처리 기조가 후퇴한다는 인식 확산
- 학교폭력 경각심 약화 우려
-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효과 약화
- 학생부 미기재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압력 발생 및 기재 되는 조치에 대한 불복 분쟁이 증가할 우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 현재 과반수 이상으로 되어 있는 학부모위원의 구성 비율을 축소(예: 1/3 수준)하고, 외부 위원을 확대하는 방안 필요
- 외부 위원 확보를 위해 교육 전문가로서 퇴직교원이나 대학교원, 지역사회 관련 공무원 등을 활용 가능
- ▶ 인력풀 운영 : (가칭) '자치위원회인력풀' 구성·운영
 - ✓ 1안 : 회의를 할 때마다 위원을 지명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 2안 : 교육청이 제공한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자치위원 (외부전문가위원)으로 위촉(전남교육청 사례)
- 통합 자치위원회 : 외부 위원을 일정 비율로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우 여러 학교 간 통합 자치위원회를 구성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자치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자치위원회 임명 전 사전교육 의무화(자격요건화), 회의 전 사전교육 시행, 결정된 조치들의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방안을 통해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자치위원회를 외부로 이관

- 자치위원회의 전문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 교원 업무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사안처리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자는 요구가 지속됨.
- 외부의 자치위원회를 통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는 점에 대한 교육 적 검토가 필요함.
- 사안조사, 수업권 침해, 전담기구 운영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함.

4. 재심 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

4. 재심 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

재심기관 일원화

1안. 시도로 일원화

2안.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

3안. 별도기구 신설

논 거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대한 피해자측의 불신이 높고, 재심과 행정심판이 동일 기관에 서 진행되어 공정성 문제 제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분리, 교육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 학생 분쟁에 관한 사항을 특별심판 절차로 심리할 수 있도록 별도 기구신설

3안. 별도기구(가칭, 학생소청심사위원회) 신설 시 기대효과

- 현행 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를 '(가칭)학생소청심사위원회'로 확대 개편, 피·가해학생들의 모든 조치를 다툴 수 있도록 함.
- ▶ 국공립 및 사립학교 간 발생하는 차별 문제 해소 가능
- 특별행정심판 절차로 하여 행정심판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음(교원소 청심사위원회 방식 준용)

4. 재심 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

(가칭) 학생소청심사위원회 설치 (예시)

- (청구권자) 국·공·사립 학교장에 의해「초·중등교육법」상 징계를 받은 학생 및 보호자와「학교폭력예방법」상의 가·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 (청구대상) 「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의한 징계, 「학교폭력예방법」 제 16조제1항, 제17조 제1항에 의거한 모든 조치('학교폭력 아님' 결정 포함)
- (청구기간)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
 - ※ 현재 재심은 조치를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간이 충분치 않은 문제 제기
- (심판참여) 청구권자와 관계없이 가·피해학생 학생 및 학교장이 참석



감사합니다. jychung@ewha.ac.kr

